

건설제도 알리미 2017. 04

CAK 대한건설협회

본 자료는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개정된 건설관련
주요제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.



1 지방계약예규 개정 · 시행(17.4.17)

■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제도 개선(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개정)

- 1인당 최대 설계보상비 확대
 - 일괄입찰 : (현행) 0.9% → (개정안) 1.4%
 - 기술제안입찰 : (현행) 0.3% → (개정안) 0.7%
 - ※ 협회건의 반영

■ 회생절차개시 기업의 적격심사 평가로 입찰참여 기회 확대(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제8절 개정)

- (현행) 적격심사 결격사유로 인한 평가 제외
 - (개정안) 적격심사 평가에 포함
 - ※ 국가계약법 예규와 일치

■ 기타 조문정리(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별표 4, 4-2 등 개정)

- 신인도 고용탄력성평가(가점) 시점 명확화
 - (현행)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자료로 평가
 - (개정안)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1년 이내 자료로 평가
- 임금체불 평가 시점 명확화
 - (현행) 입찰공고일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간 위반건수
 - (개정안)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직전 3개년간 위반건수

2 하도급법 개정('17.4.18) · 시행('17.10.19)

●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허용 요건 강화(제17조제1항)

- (현행) 원사업자가 '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'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 금지

⇒ (개정)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, 다만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

참조	예외적 사유
①	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
②	원사업자에 대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 신청,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
③	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

↳ 다만,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토록 수정안 마련